

| | | | |
|-----|------|-----|--|
| 매 수 | 참고자료 | 사 진 | 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
| 2 | 0 | 0 | 소장 : 강중호 (031-8008-8200) |
| | | | 팀장 : 김동식 (031-8008-8392) |
| | | | 담당 : 한명희 (031-8008-8382 / 010-3349-0553) |

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 6월~8월까지 도내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업체 376곳 민·관 합동 단속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노후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 시설복구 유도과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하천 → 우수토구 → 도로맨홀 → 사업장맨홀 →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번)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상담 요령〉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6.~8월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 031-120 (경기도 콜센터)
- ※ 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포상금 지급